



작 성 요 령

1. 세액면제(감면)신청서는 부동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2. ⑦란 산출세액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재합니다.
3. ⑩란 상환(예정)액 또는 사용(예정)액은 재무구조개선계획이행보고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4서식) ⑮·<17>란의 금액 또는 자구계획이행보고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5서식) ⑫·⑮란의 금액 및 구조조정사용계획(명세)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 12서식) <21>란의 합계금액을 기재합니다.
4. ⑪란 양도대금은 부동산양도명세서(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3서식 부표) ⑦란의 가액(실가)을 기재합니다.

부 동 산 양 도 명 세 서

법인명 :

과세연도 :

① 자 산 명	② 소 재 지	③ 면 적	양 도			취 득		⑩ 각종 공제액	⑪ (⑥·⑦-⑨-⑩) 차감금액
			④구분	⑤양도 일자	⑥가액 (기준시가)	⑦가액 (실가)	⑧취득 일자		
합 계									

작 성 요 령

1. ④구분란은 장기할부조건인 경우 "장기할부"라고 기재합니다.
2. ⑥가액(기준시가)·⑦가액(실가)란은 소득세법 제96조 또는 법인세 법 제5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을 기재합니다.
3. ⑨란 취득가액등은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합니다.
4. ⑩란 각종 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 및 동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을 기재합니다.